의안번호	2125369
의 뢰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3.11.22.
추계번호	23D471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,000만원, 2029년 2억 5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2억 200만원(연평균 2억 4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재난원인조사(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)	230	236	240	246	250	1,202	240

주: 1. 재난원인조사(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,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이 연평균 2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은 2023년 기준 1억 1,0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(재난원인조사)	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, 중앙대책본부 등을 구성·운영하게 한 재난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(재난원인조사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에 대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현행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단의 활동과는 구분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관련 비용은 재난원인조사단 연간 운영비를 참고하여 추계

○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재난원인조사단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재난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운영하며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재난은 7건이고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은 아님

[표 2]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: 2018~2022년

재난사고명	사고발생일자	조사기간
낚싯배 안전사고(통영시 해상 무적호 충돌사고 등 포함)	'19.06.14	2019.05.29~2019.08.29
도림천 고립사고	'19.09.05	2019.09.06~2020.01.14
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	'19.10.15	2019.10.07~2020.01.31
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	2019.07.31	2019.09.05~2020.02.24
순천-완주간 사매2터널 교통사고	2020.02.17	2020.03.20~2020.07.17
숙박시설 화재사고	2020.01.25	2020.02.25~2020.08.19
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등	2020.06.17	2020.09.17~2021.05.21

자료: 행정안전부

○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의 경우,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의 구성·운영을 통해 대응한 사례가 많아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, 지역재난대책본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

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[1)]

❑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❑ 본 추계에서는 연평균 2건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○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2023년 기준 1억 1,000만원을 편성

-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재난·사고 조사 : 7,700만원
  : 재난원인조사단(반) 회의참석 수당 150천원*6명*24회=2,200만원
  : 재난원인조사단(반) 현장조사 수당 350천원*6명*3회*6일=3,800만원
  : 조사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 1,500천원*8회=1,200만원
  :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300천원*18회=500만원
- 재난원인조사 차량 및 회의실 임차 : 1,000만원
- 재난·사고 현장조사 여비 : 1,900만원
-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간담회 : 400만원

○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

[표 3] 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	115	118	120	123	1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3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4%	2.4%	2.2%	2.2%	2.1%	2.1%

❑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,000만원, 2029년 2억 5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2억 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의 재난원인조사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5~2029년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특별재난지역 재난 수(A, 건)	2	2	2	2	2	-
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(B, 만원)	115	118	120	123	125	-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230	236	240	246	250	1,202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결과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이 연평균 2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오명희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